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45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
1.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3. 25.
3. 회 부 일 : 2026. 3.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행법령 및 제도

1) 온라인도매시장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

정부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2023년)시키고 활성화를 추진 중임.

온라인도매시장은 디지털 기반 전국 단위 거래를 통해 산지-소비자 간 거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2) 현행 법령 체계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에 따라 운영되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서 도매시장 운영·관리 및 거래주체의 거래실적·재무건

전성 등에 관한 평가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최근 본회의 의결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함)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 플랫폼 구축, 거래주체 등록, 공시, 품질관리, 물류센터, 보고·검사·명령 및 제재 등 운영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는 ‘성과관리/평가’의 명시적 근거 조문은 부재함.

신법 제3조는 온라인도매거래 및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사항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도매시장 평가체계도 신법 내에서 완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함.

나. 구체적 문제점

1) 거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은 증가 추세이나, 전체 도매시장 대비 비중은 여전히 낮아(보고서 기준 약 3.7%) 오프라인 유통구조 전환을 견인할 정도의 영향력은 제한적임.

정부가 설정한 중장기 목표(예: 2030년 목표 등)의 적정성 또한 실적 흐름을 반영해 점검할 필요가 제기됨.

2) 품질·신뢰성·운영체계 전반의 제약 지속

온라인 거래 특성상 상품 실물 확인이 어렵고, 품질 기준·규격화 부족, 분쟁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판매자·구매자 모두 거래 신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물류(거점물류센터 등) 인프라·운영 과정에서 비용 증가 및 절차 복잡성도 한계로 지적됨.

3) 이상거래 의심 및 실적관리·감독 강화 필요

조사 결과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등 거래실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됨.

오프라인 도매시장과 온라인도매시장 간 실적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적 중복·왜곡 가능성도 존재함.

4) 평가체계 부재로 인한 정책 환류(Feedback) 미흡

신법에는 보고(제25조), 검사(제26조), 명령(제27조) 등 사후관리 수단은 존재하나, 이를 작동시키는 전제인 정기적 평가(성과관리) 체계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운영성과 검증, 목표 달성 여부 판단, 제도개선 근거 마련이 구조적으로 취약함.

결과적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정성·신뢰성 확보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함.

다. 제·개정 방향

1) 신법에 ‘성과관리·평가’ 조문 신설(법률상 근거 명문화)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만큼, 운영 성과 및 거래의 공정성·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 평가 의무(또는 정기 평가 근거)를 신법에 명시함.

평가 근거를 농안법 제77조에 준용·편입하기보다, 신법이 온라인 도매시장 영역에서 우선 적용되는 점(제3조)과 온라인 특수성을 고

려하여 신법 내 독립 조문으로 체계화함.

2) 평가 항목의 범위 설정(온라인 특수성 반영)

최소한 다음 요소를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법률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지표는 부령·대통령령으로 위임:

- 거래실적 및 거래활성화 수준
- 가격형성의 투명성 및 거래질서 준수 여부(이상거래 포함)
- 품질관리 수준 및 분쟁 발생·처리 현황
- 정산·여신·물류 운영의 안정성 및 적정성(거점물류센터 포함)
- 이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

3) 평가결과의 집행력 확보(명령·개선 연계)

평가 결과가 단순 통계로 그치지 않도록,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필요한 경우 제27조(명령)로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장운영자·온라인도매판매자·온라인도매구매자·거점물류센터 등에게 평가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24조의2).

Ⅲ. 검토의견

1.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432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u><신 설></u>	법률 제21432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온라인도매시장의 평가)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의 적 정성, 거래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평 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한다. 1. <u>거래실적 및 거래활성화 수준</u> 2. <u>가격형성의 투명성 및 거래질서 준 수 여부</u> 3. <u>품질관리 및 분쟁 발생·처리 현 황</u> 4. <u>거래·정산·물류 운영의 안정성 및 적정성</u> 5. <u>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현 행	개 정 안
	③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운영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절차·방법 및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¹⁾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도매법”)은 현재 공공기관인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²⁾를 통하여 운영 중인 농수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26년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3월 10일에 공포된 제정 법률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3월 11일에 시행 예정임.

1) 법률 제21432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7년 3월 11일 시행 예정임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따른 규제특례

현재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서는 ①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와 ② 거래주체의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① 도매시장 개설자에게는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명령하는 등의 조치를, ② 도매시장법인 등에게는 시설 사용면적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나 지정(승인)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농안법 제77조에 따른 평가제도 개요 】

1.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

평가대상	평가자	평가내용	결과활용
도매시장 (개설자)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거래제도 및 물류체계 개선 등 도매시장의 운영·관리	- 부진한 사항에 대한 시정 명령 - 부진한 시장 관리의 위탁 권고

2. 거래주체의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

평가대상	평가자	평가내용	결과활용
도매시장법인 · 공판장, 시장도매인	농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	- 부진 법인 등의 시설 사용면적 조정, 차등 지원 등 조치(명령) - 부진 법인 등의 지정(승인) 취소
중도매인	도매시장 개설자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	- 부진 중도매인의 시설 사용면적 조정, 차등 지원 등 조치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 관하여 규정하는 온라인도매법에도 농안법과 유사하게 정부 차원의 평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① 거래의 실적 및 활성화, ② 가격형성의 투명성 및 거래질서, ③ 품질관리 및 분쟁 발생·처리, ③ 거래·정산·물류 운영의 안정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농안법과 달리 거래주체의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를 규정하지 않고, 오직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만을 규정하려는 것임.

이는 지정 또는 승인 절차를 거침에 따라 거래주체의 수가 한정적인 농안법상 도매시장과 달리, 온라인도매시장은 오직 등록 절차만을 요구함에 따라 거래주체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실제로도 현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하여 aT가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 1개소에서 6,155인에 달하는 거래주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안법상 도매시장과 달리 현실적으로 거래주체의 경영관리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농안법과 온라인도매법의 도매시장 거래주체 등 비교 】

구분	농안법 (2024년 기준)		온라인도매법 (2026. 7. 20. 기준)	
	시장/주체	시장/인원 수	시장/주체	시장/인원 수
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45	온라인도매시장	1
판매자	도매시장법인·공판장	117	온라인도매판매자	1,817
	시장도매인	70		
구매자	중도매인	8,069	온라인도매구매자	4,338

※ 주①: 농안법상 오프라인도매시장에서는 민영도매시장을 제외함

※ 주②: 아직 온라인도매법이 시행예정이므로 법정 온라인도매시장은 없으나, 현재 한국농수산물품유통공사(aT)가 운영 중인 온라인도매시장(KAFB2B)를 기준으로 현황을 작성함

※ 자료: ① 오프라인도매시장: 농림축산식품부·aT, “2024년 도매시장 통계연보”, 2025

② 온라인도매시장: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대하여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시장운영자에게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 또는 권고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온라인도매시장의 체계적인 제도개선 및 환류 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안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와 관련하여, ① 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관리 측면을 평가하려는 것이므로 사실상 시장운영자에 대한 평가로만 한정되는 점,

② 시장운영자가 운영하는 온라인거래플랫폼 내부의 자료³⁾만으로도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받을 수 있을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자료제출 의무자에서 시장운영자 외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거점물류센터 운영자를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의 체계·자구와 관련해서는 안 제24조의2제4항이 시장운영자에 대한 명령 규정이므로, 인용 규정을 시장운영자에 대한 조치 명령 규정인 제27조제1항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3)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온라인거래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시장운영자는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이하 “온라인거래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온라인거래플랫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시스템
2. 온라인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상장, 거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
3. 온라인도매거래의 대금정산 및 여신관리 시스템
4. 온라인도매거래 농수산물의 통합 물류관리시스템
5. 온라인도매시장 고객지원시스템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운영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업무규정의 변경, 업무처리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신 설>	제24조의2(온라인도매시장의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운영의 적정성, 거래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도매시장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거래실적 및 거래활성화 수준 2. 가격형성의 투명성 및 거래질서 준수 여부 3. 품질관리 및 분쟁 발생·처리 현황 4. 거래·정산·물류 운영의 안정성 및 적정성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운영자, 온라인도매판매자, 온라인도매구매자 및 농수산물거점물류센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운영자에게 제2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제24조의2(온라인도매시장의 평가)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운영자는----- ----- ----- ----- -----. ④ ----- ----- -----제27조제1항-----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 의 절차·방법 및 자료 제 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 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에 관하여 제도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환류하려는 의미가 있어 수용한다는 의견임.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⁵⁾

문 의 처

02)6788-5416

5)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 비용추계서, ②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